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568
----------	-------

발의연월일 : 2025. 9. 1.

발 의 자 : 박성훈 · 김은혜 · 서일준
김성원 · 신성범 · 이인선
추경호 · 김정재 · 박수영
엄태영 · 최은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항만을 오가는 내항상선은 80만 도서지역 주민들의 친숙한 교통수단이자 국내 물류의 15% 이상을 담당하는 친환경 운송수단임. 비상시에는 국가 전략물자 운송을 위한 제4군 임무도 수행하는 등 국가 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옴.

그러나 현재 내항상선 업계는 심각한 구인난과 그에 따른 선원의 고령화와 업종의 과소화로 인해 산업 기반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음. 특히, 내항상선 선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선원법」이 우선 적용되는 특수성으로 강도 높은 장시간 근로(1주 최대 91시간), 선박이라는 공간적 고립, 열악한 작업환경, 낮은 처우 등에 처해 있어 승선 기피 현상은 업계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음.

내항해운 업계의 존폐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신규 인력 유입을 위

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최근 해운조합 설문조사 결과 비과세 확대 시 95% 이상 예비선원들이 내항상선 승선근무 의향이 있다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내항상선 선원 인력수급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항상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선원들의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여 내항상선 선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거목 신설).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에 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커.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선(商船)에
종사하는 「선원법」에 따른 선원이 받는 급여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액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 세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과세소득)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소득	3. ----- ----- -----
가. ~ 처. (생 략)	가. ~ 처. (현행과 같음)
<신 설>	<u>커.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u> <u>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상선(商船)에 종사하는</u> <u>「선원법」에 따른 선원이</u> <u>받는 급여 중 대통령령으</u> <u>로 정하는 금액</u>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